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수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86

발의연월일: 2024. 6. 12.

발 의 자:이수진・박선원・민병덕

김현정 • 백승아 • 송옥주

이재관 · 송재봉 · 김정호

김남근 • 민형배 • 김 윤

이인영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우리나라는 2024년 1분기 합계출산율이 0.76명으로 나타나는 등 최 근 심각한 초저출생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. 이러한 초저출생 현상은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바,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모성 보호 및 일·가정 양립 지원 제도를 대폭 강화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1)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을 현행 '10일'에서 '30일'로 확대하고 그 사용 기간 전체를 유급으로 하도록 하며 분할 사용 횟수를 현행 '1회'에서 횟수와 상관없이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없애고, 최소 7일 이상을 사용하도록 유도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출산에 따른 배우자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고, 2)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'연간 3일'에서 '연간 10일'로 확대하고 유

급 기간을 현행 '최초 1일'에서 그 사용 기간 전체로 확대하여 난임치 료에 필요한 실질적인 휴가 기간을 보장하고 휴가 사용에 따른 부담 을 덜어줌과 함께 사업주의 휴가 시기 조정을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 하고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난임치료를 적시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하 며. 3) 육아휴직.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. 육아지원을 위한 사업주의 조 치 대상 근로자 자녀의 나이와 학년을 '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 학년 이하'에서 '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'로 확대하고. 4)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'1년'에서 '2년'으로 확대하 며. 5) 가족돌봄휴직의 사유에 '양육'을 추가하여 감염병의 확산 등의 원인으로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· 유치원 · 학교 등의 시설이 정상적 으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연간 휴직 기간 9 0일 중 '최초 30일'을 유급으로 하며 이에 대한 국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으로 현행 모성 보호와 일 가정 양립 지원 제도를 보완 ・강화하고자 함(안 제18조 등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안」(의안번호 제376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, 해당 법률안이 의결 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1항 중 "배우자 출산휴가"를 "배우자 출산휴가,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제18조의2제1항"을 "제18조의2제1항, 제18조의3제1항"으로 한다.

제18조의2제1항 전단 중 "10일"을 "30일"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"1회에 한정하여"를 "횟수에 상관없이"로 하며,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⑥ 사업주는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배우자 출산휴가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.
- ⑦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7일 미만으로 청구한 경우에는 7일 이상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도 록 하고,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.

제18조의3제1항 본문 중 "연간 3일"을 "연간 10일"로, "최초 1일"을 "사용한 휴가기간"으로 하고,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,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을 각각 제4항과 제6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, 제3항 및

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.
-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.
- ⑤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난임치료휴가의 청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19조제1항 본문 중 "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"를 "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1년"을 "2년"으로 한다.

제19조의2제1항 본문 중 "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"를 "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(이하 "육아기"라 한다)"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"1년"을 "2년"으로 하며, 같은 항 단서 중 "제 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"를 "근로자"로, "기간을"을 "기간의 두 배를"로 한다.

제19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"를 "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"로 한다.

제20조제2항 중 "국가는"을 "국가는 육아기 재택근무 등"으로 한다. 제22조의2제1항 본문 중 "노령"을 "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"으로 하고.

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제4항제3호에 따라 연장된 가족 돌봄휴가"를 "제1항에 따라 자녀의 양육으로 인한 가족돌봄휴직 및 제 4항제3호에 따라 연장된 가족돌봄휴가"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부터 제 10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⑥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족돌봄 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족돌봄휴직 기간 중 최초 30일은 유급으로 한다.
-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항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37조제2항제6호 중 "제22조의2제6항"을 "제22조의2제8항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의2. 제18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배우자 출산휴가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 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않은 경우

제39조제3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의2. 제22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가족돌봄휴직을 유급으로 하지 아 니한 경우

법률 제16558호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-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배우자 출산휴가에 관한 적용례) 제18조의2제1항·제4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 용하였거나 사용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
- 제3조(난임치료휴가에 관한 적용례) 제18조의3제1항·제2항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이후 연간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
- 제4조(육아휴직에 관한 적용례) 제19조제1항·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
- 제5조(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적용례) 제19조의2제1항·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
- 제6조(가족돌봄휴직에 관한 적용례) 제22조의2제1항·제6항·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 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성 안
제18조(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	제18조(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
지원) ① 국가는 제18조의2에	지원) ①
따른 배우자 출산휴가, 「근로	배우자 출산휴가, 제18조
기준법」 제74조에 따른 출산전	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
후휴가 또는 유산・사산 휴가를	
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	
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그 휴가	
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	
하는 금액(이하 "출산전후휴가	
급여등"이라 한다)을 지급할 수	
있다.	
② 제1항에 따라 지급된 출산전	2
후휴가급여등은 그 금액의 한도	
에서 <u>제18조의2제1항</u> 또는 「근	<u>제18</u> 조의2제1항, 제18조의3
로기준법」 제74조제4항에 따	<u>제1항</u>
라 사업주가 지급한 것으로 본	
다.	
③ ~ ⑤ (생 략)	③ ~ ⑤ (현행과 같음)
제18조의2(배우자 출산휴가) ①	제18조의2(배우자 출산휴가) ① -
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	
산을 이유로 휴가(이하 "배우자	
출산휴가"라 한다)를 청구하는	
경우에 <u>10일</u> 의 휴가를 주어야	<u> 30일</u>
한다.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	

은 유급으로 한다.

- ② ~ ③ (생 략)
-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<u>1회에 한</u> 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.

⑤ (생략)

<신 설>

<신 설>

제18조의3(난임치료휴가) ① 사업 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(이하 "난임치료휴 가"라 한다)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, 이 경우 <u>최초 1일</u>은 유급 으로 한다. 다만, 근로자가 청구

		_		
			•	

- ② ~ ③ (현행과 같음)
- ④ ----- <u>횟수에</u> <u> 상관없이</u> -----

-----**.**

- ⑤ (현행과 같음)
- ⑥ 사업주는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후에 그 근로 자를 배우자 출산휴가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한다.
-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지 아니하거 나 7일 미만으로 청구한 경우에 는 7일 이상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도록 하고,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.

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수 있다.

<신 설>

<신 설>

② (생 략) <신 설>

③ (생략)

제19조(육아휴직) ① 사업주는 임 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
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산전 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 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.
-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 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 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협의하 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.
- ④ (현행 제2항과 같음)
- ⑤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난임 치료휴가의 청구 업무를 처리하 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난 임치료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⑥ (현행 제3항과 같음)

제19조(육아휴직) ① -----

----- 12세 이하 또

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(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(이하 "육아휴직"이라 한 다)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 용하여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<u>1년</u> 이내 로 한다.
- ③ ~ ⑥ (생 략)

제19조의2(육아기 근로시간 단축)

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 로시간의 단축(이하 "육아기 근 로시간 단축"이라 한다)을 신청 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. 다만, 대체인력 채용이 불 가능한 경우, 정상적인 사업 운 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・③ (생 략)

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 간은 1년 이내로 한다. 다만, 제

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
② <u>2년</u>
③ ~ ⑥ (현행과 같음)
제19조의2(육아기 근로시간 단축)
① <u>12체 이</u>
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
(이하 "육아기"라 한다)

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제19 조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 으면 그 <u>기간을</u> 가산한 기간 이 내로 한다.

⑤ ~ ⑦ (생 략)

제19조의5(육아지원을 위한 그 밖의 조치) ① 사업주는 만 8세 이 한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1. ~ 4. (생 략)

② (생략)

- 제20조(일·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) ① (생 략)
 - ② <u>국가는</u> 소속 근로자의 일·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도입하는 사업주에게 세 제 및 재정을 통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22조의2(근로자의 가족 돌봄 제22조의2(근로자의 등을 위한 지원) ① 사업주는 등을 위한 지원) ①

자
- <u>기간의 두 배를</u>
⑤ ~ ⑦ (현행과 같음)
제19조의5(육아지원을 위한 그 밖
의 조치) ① <u>12세 이하</u>
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
,
1. ~ 4. (현행과 같음)
② (현행과 같음)
제20조(일·가정의 양립을 위한
지원) ① (현행과 같음)
② 국가는 육아기 재택근무 등
제22조의2(근로자의 가족 돌봄
드 이 하지 기이 (1)

근로자가 조부모, 부모, 배우자, 배우자의 부모, 자녀 또는 손자녀(이하 "가족"이라 한다)의 질병, 사고, <u>노령으로</u>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(이하 "가족돌봄휴직"이라한다)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. 다만,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,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,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② ~ ④ (생 략)
- ⑤
 제4항제3호에 따라 연장된

 가족돌봄휴가는 다음 각 호의

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

 만 사용할 수 있다.

1. ~ 4. (생 략) <신 설>

 - <u>노렁</u>	또는	자녀의	양육
 			,

- ② ~ ④ (현행과 같음)
- ⑤ 제1항에 따라 자녀의 양육으로 인한 가족돌봄휴직 및 제4항제3호에 따라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.
 - 1. ~ 4. (현행과 같음)
 - ⑥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5항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

<신 설>

⑥ ~ ⑩ (생 략)

제37조(벌칙) ① (생 략)

- 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1. ~ 5. (생략)
- 6. 제22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 휴가(같은 조 제4항제3호에 따라 기간이 연장된 경우를 포함한다)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

7. ~ 9. (생 략)

- ③ (생 략)
- ④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

는 가족들음유식 기간 중 최초
30일은 유급으로 한다.
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예산의
범위에서 제6항에 따른 비용의
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
있다.
$\underline{8} \sim \underline{0}$ (현행 제 6 항부터 제 1
0항까지와 같음)
세37조(벌칙) ① (현행과 같음)
②
1. ~ 5. (현행과 같음)
6. <u>제22</u> 조의2제8항
7. ~ 9. (현행과 같음)
③ (현행과 같음)
4

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.

1. ~ 3. (생략) <신 설>

4. ~ 6. (생략) 제39조(과태료) ① • ② (생 략)

③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의2. ~ 8. (생략) <신 설>

9. (생략)

④·⑤ (생략)

일부개정법률 부칙

- 1. ~ 3. (현행과 같음)
- 3의2. 제18조의2제6항을 위반하 여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배우자 출 산휴가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않은 경우
- 4. ~ 6. (현행과 같음)

제39조(과태료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

(3) ---

1의2. ~ 8. (현행과 같음)

- 8의2. 제22조의2제6항을 위반하 여 가족돌봄휴직을 유급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
- 9. (현행과 같음)
- ④·⑤ (현행과 같음)

법률 제16558호 남녀고용평등과 법률 제16558호 남녀고용평등과 일 ·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 ·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

제4조(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 <삭 제> 간 단축에 관한 적용례) 제19조 의2 및 제19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 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.